

보내는 사람

세무서장

□□□□□

받는 사람

님 귀하

□□□□□

원 천 공 제 통 지 서(갑)
(원천공제의무자용)

원 천	법인명(상호)		대 표 자	
공 제	사업장 소재지			
의무자	사업자등록번호			
원천공제기간				

통 지 내 용

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	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	원(매월 원)
	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	원(매월 원)
	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	원(매월 원)
	합 계	원(매월 원)

1. 해당 통지를 받은 사업자(이하 "원천공제의무자"라 함)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의 변동에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(채무자 및 월별 원천공제 금액 등은 뒤쪽 참고)

신고방법 : 상환금명세서 서면신고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
납부방법 : 아래 계좌번호로 납부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
납부할 계좌번호 : 납부가능시간 : (: ~ :)

2. 또한, 채무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퇴직소득의 20%(단, 퇴직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)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.

3.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통지될 수 있으며,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
4. 채무자의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되는 경우(인사이동, 법인의 인수·합병·분할, 사업의 양도·상속 등)에는 변경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5.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 직인

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(☎)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원 천 공 제 통 지 서(을)
(원천공제 의무자용)

일련 번호	소득 구분	성 명	생년월일	연 간 의무상환액 (a)	기납부된 의무 상환액 (b)	원천공제기간 잔여 월수 (c)	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(a-b)/c	비고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13								
14								
15								
16								
17								
18								
19								
20								
21								
22								
23								
24								
25								
26								
27								
28								
29								